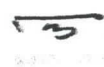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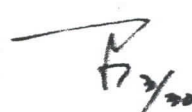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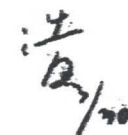


사전감사대상

자용 5511 — 242			
93 3 29			
조사역	과 장	부부장	부 장
      			
기안자	최 낙 군	합의 (법규과) 기획부장	
소 속	금융기획과	참조	
작 의	영원 전화 4465		
수 신 참 조 제 목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개정			
경제행정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예로를 완화하고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붙 임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개정(안) 1부. 끝.			

한국은행

청년 021-10700 11 19

365

(경제사석)



장 수	과 국련한
장 수	당해기업
장 수	장한 제3
장 수	의 담보주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조 ~ 제3조 (생 략)	제1조 ~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 (여신취급기준)	제4조 (여신취급기준)	
① ~ 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금융기관은 지급보증 취급시 대상채무의 범위, 금액, 기간 및 상대방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삭 제)	- 지급보증방식에 관한 규제 폐지
(신 설)	③ 금융기관은 상업어음 할인시 어음관계인중 한 사람이 한국은행 재할인적격업체인 어음에 대해서는 신용으로 취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업어음할인 및 재할인취급 규정」 개정에 따른 이관
제4조의2 (담보취득제한의 예외 등)	제5조 (담보취득제한의 예외 등)	- 조 제하
① 「규정」 제3조의 2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담보취득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① (현행과 같음)	
1. 중소기업(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기타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영위기업 제외)에 대한 시설자금취급과 관련한 「규정」 제3조의2 제3호 및 제6호에서 정한 비업무용부동산 및 제3자명의부동산(단, 「규정」 제3조의2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부동산 제외)으로서 담보제공자가 1992. 7.16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취득		
2. 중소기업(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기타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영위기업 제외)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및 지급보증 취급과 관련한 「규정」 제3조의2 제6호에서 정한 제3자명의 부동산(단, 「규정」 제3조의2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부동산 제외)으로서 담보제공자가 1992. 7.16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취득	1.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취급과 관련한 「규정」 제3조의2 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부동산으로서 당해기업이 1993. 3. 3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및 규정 제3조의2 제6호에서 정한 제3자명의부동산(단, 규정 제3조의2 제1호에서 정한 부동산 제외)의 담보취득	-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취급시 부동산담보 취득제한 완화

명	개	정 (안)	비 고
3. 동업관계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기타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영위기업 제외)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및 지급보증 취급과 관련하여 동업기업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다른 동업인이 동업기업에 업무용으로 제공하고 「규정」 제3조의2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되지 않는 부동산의 담보취득			
4.~7. (생략)	2.~5.	(현행과 같음)	- 호 제상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 (대출보증)			
① 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은 총대출금의 10% 범위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출보증은 대출담보로 제공되는 대내지급보증으로서 다음 각호의 지급보증을 제외하며, 총대출금은 국내 원화 및 외화대출금과 내국수의 「유선스」 잔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삭제)	- 대출보증한도 규제 폐지
1. 전대차권자금대출을 위한 지급보증			
2.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운용세칙」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보증			
3. 이 세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지급보증			
제6조 (사채보증 및 인수)			
① 금융기관의 보증대상 사채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또는 매출방식으로 발행되고 5년 이내에 최종상환일이 도래하는 사채에 한한다.			

현	명	계	정 (안)	비	고
	㉔ 금융기관은 자행 또는 타행이 보증한 사채를 인수할 수 없다. 다만,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인수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개별 금융기관의 인수액은 인수단에 의한 인수 총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㉕ 금융기관은 타금융기관(비은행금융기관 포함)의 사채보증을 위한 지급보증과 비은행금융기관의 사채보증채무의 인수를 할 수 없다. ㉖ 금융기관의 대기업에 대한 사채보증총액은 보증사채의 역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기업 순자산의 2배 범위내로 하되 자본금 및 준비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발행되는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보증 취급액은 사채보증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㉗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대여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 대여회사에 대한 사채보증은 당해회사 자기자본의 5배까지 취급할 수 있다. ㉘ 기발행된 보증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사채에 대한 보증취급의 경우 기발행 사채에 대한 보증취급액은 제4항의 사채보증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 (상업어음담보보증) ㉙ 상업어음에 대한 보증은 당해 상업어음을 담보로 취득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형식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식 제) 제6조 (어음보증 및 인수) (식 제)		- 사채보증 및 인수에 관한 규제 폐지 - 조영변경 - 지급보증방식에 관한 규제 폐지

현 명	개 정 (인)	비 고
① 금융기관은 상업어음담보보증 취급시 「상업어음환인 및 재할인취급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업어음 해당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융통어음에 대한 보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상업어음담보보증의 상대방은 비은행금융기관에 한한다. 제6조의 2 (무역어음의 인수) ① 금융기관은 「무역금융규정시행세칙」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하고 있는 수출신용장, 선수통계약서,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내국신용장(이하 "수출신용장등"이라 한다)을 근거로 발행된 환어음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어음(이하 "무역어음"이라 한다)을 인수할 수 있다. 1.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로서 수출신용장등 상의 선척기일 또는 물품인도기일에 최장 10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어음 2. 액면금액이 수출신용장등의 금액(이하 "기준")에 인수당일의 대외적환산 환에입률을 곱한 금액이내로서 500만원 이상인 어음 ② 금융기관은 허위 또는 변조된 수출신용장등을 근거로 발행된 환어음을 인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8조 ~ 제9조 (성 격) (선 실)	① 금융기관의 보증 및 인수대상어음은 상업어음에 한한다. (식 제) (식 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은 「무역금융규정시행세칙」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하고 있는 수출신용장, 선수통계약서,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내국신용장(이하 "수출신용장등"이라 한다)을 근거로 발행된 환어음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어음(이하 "무역어음"이라 한다)을 인수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식 제) 제7조 ~ 제8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세칙은 1993.4.1부터 시행한다.	- 항 제상, 「상업어음환인 및 재할인취급규정」 개정에 따른 지구수정 - 보증상대처에 관한 제한 폐지 - 현행 제6조의2(무역어음의 인수)와 제7조(상업어음담보보증)를 개정규정 제6조(어음보증 및 인수)로 통합 - 선언장 내용이므로 폐지 - 조 제상 - 시행일자 명시